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엠플러스자산운용(주)
(영문명) MPLUS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www.mplusasset.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3층
(전 화) 02 - 528 - 0312

대 표 이 사 : 장 병 갑

담 당 팀 장 : (직 책) 팀장(경영관리팀)
(성 명) 이 승 태 (전 화) 02 - 528 - 0306

작 성 자 : (직 책) 과장(경영관리팀)
(성 명) 송 주 현 (전 화) 02 - 528 - 0312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11호)

사업목적 변경

1. 변경내용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삭제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제 2 조 (목적) ① 본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2.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 업무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5. 국내외 경제, 경영,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6. 제5호와 관련된 도서 및 자료 등의 출판 업무 7. 콜거래 업무 8. 어음매입 업무 9.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10. 상기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② 위 각항의 업무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변경후	제 2 조 (목적) ①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무단위에 한한다. 1. 집합투자업 2. 투자매매업 3. 투자중개업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얻어서 영위하는 다음 각목의 금융업무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2.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가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6.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7. 상법에 따른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8.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③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 외
--	--	--

		에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로부터의 적절한 인가·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2. 변경 주요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3. 사업 추진일정		1.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2.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3.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2009. 2. 4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 6. 24
-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2009. 6. 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